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 방향과 내용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정민자

● 목 차 ●

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 배경	II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내용
I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입법방향	IV. 맺으며 참고문헌

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배경

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가족해체현상은 IMF를 전후하여 가속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해체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이혼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현주소는 이혼증가율 세계 1위, 조이혼율 세계 2위로서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2위이며, 하루 평균 840쌍이 혼인하는 동시에 398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 즉 100쌍이 결혼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47쌍이 이혼도장을 찍고 있어 가족의 해체는 심각한 우려 수준이다.

그런데 아주 쉽게 협의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차이”가 44.7%, “가족간의 불화” 14.4%, “경제적인 이유”가 13.6%, “배우자 부정” 8.6%, “학대”가 4.8%, “기타”가 13.3%, “건강”이 0.6%이다(통계청, 2002). 여기서 90%이상이 협의 이혼을 하면서 주로 성격차이나 부부간의 불화, 가족의 문제, 부부문제 등의

이유를 본다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가족이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나타난 또 하나 가족 현상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률 세계 1위(평균 1.17)로 기록되는 이 현상은 우리사회의 유지를 염려해야 할 정도이다. 최소한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려면 1.98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것을 본다면, 출산장려를 통해 자녀수를 올리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가족정책과제가 되어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단이 준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3년 7월).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노령화사회를 더욱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며,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무자녀 가정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만혼의 경향, 취업부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등이 혼재되어 있다. 행복추구권을 찾으려는 젊은 세대의 경우는 부부취업으로 가정생활의 스트레스, 자녀양육과 부담의 증가, 노인부양의 기피, 부부평

본 논문은 2003년 8월 2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가정학회가 주관한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 발표임.

등의식 증대 등으로 자녀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되었다. 이는 정책의 부재 이전에 가치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가족환경의 변화를 진단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에 의하면 최근 가족기능은 매우 약해져 부자가정, 모자가정, 기타 해체가정은 물론이고, 일반가정에서조차 여가와 휴식의 기능이 낮아졌고, 신체·정서적 부양기능, 사회보장기능 외는 모두 낮아져 한국가족의 기능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갈등의 증가,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가사노동의 분담은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증가와 부부폭력의 증대, 자녀학대의 증가는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다른 형태의 가족해체현상을 일으키고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쉼터의 설치와 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설치, 청소년 가출, 청소년 쉼터와 상담소의 설치와 운영, 자녀의 유기와 아동결식문제, 노인의 유기와 학대, 노인부양의 거부 등의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치료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족해체현상의 원인을 가족의 책임감 부족, 경제적 부양의 태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유기, 학대와 폭력, 부부갈등, 가족간의 갈등 등의 가족 내적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의 열려 있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자생적인 변화는 다시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은 산업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과업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그 희생물로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몸부림을 치는 능동적인 자기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족은 살아있는 또 하나의 조직으로 자기규제력과 문화를 창조하는 힘을 가진 실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조용히 변화해가는 가족의 역

동결과로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는 가랑비같이 내려 사회문제의 큰비가 되어 해결사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 있는 셈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가족원들이 살고 있는 가정(생활공동체)의 건강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가정문제를 가능한 미리 예방하고 가정을 강화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과 전달체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공동체 문화를 살리기 위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가정문제 상담을 통해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켜 가족원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유지를 위한 인구조절, 가족의 지원을 통한 가족원의 보호와 부양, 건강한 가족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국가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유희 인력을 사회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자녀양육 스트레스, 가사노동의 분담문제 등을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의식교육 등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제정 배경

생활공동체로서 가정이 건강성을 유지할 때, 가정에 가족원들이 머무르고 평화롭게 일상을 살 수 있다.

환경 관련법이 만들어진 예를 들어 보자.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파괴되어 생명의 위험이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양한 환경법을 만들어 위해환경을 다시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고, 우리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환경단체를 만들고 감시도 하고 다양한 환경관련 사업도 벌이게 되었다. 가정환경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가정의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 파괴된 가정은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도록 하고, 가정의 속성을 알아 가족의 생명유지가 가능하도록 운동도 하고 단체도 만들고 감시도 하고 교육도 하자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생태환경도 다양하게 접근하여 지켜나가야 하듯이,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인 가정도 여러 면에서 지켜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물이 인간에게 유익한 물인가의 지표가 개발되듯이, 어느 정도 건강한 가정이 가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표인가는 이미 연구지표들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조건들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가정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와 패러다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과 윤리를 만들고 그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대량의 실직으로 인해 가족의 유대가 충분히 깨질 수 있는 나약한 가정 환경조건을 경험한 반면, 강력한 사랑과 유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가정은 주어진 천혜의 안식처가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자하는 노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위험은 어떠한 형태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MF 이후 가정을 연구하는 학회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에 이르렀는데,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이 가정복지의 주요 정의로서,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등의 개별대상의 범위를 넘어 일반 가정까지 지원을 하여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한국가정관리학회, 1999). 여기서 가정복지의 대상은 수혜 대상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지원 시스템으로 상호호혜성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국회의원의 인식아래, 2000년 김성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가정복지기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14개조로 발의되는 것으로 마감해야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문제가 가족동반 자살이나 자녀 학대·유기, 주부 가출, 가정폭력, 노인유기 등의 극단의 방법으로 강력해지면서 삶의 황폐화 현

상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가정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가정생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2002년 5월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폐과되었던 보건복지부의 “가정아동복지과”의 부활과 함께 가정복지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시대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2003년 7월21일자로 발의하여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가정(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기본적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개인과 가족이 혼자 하기엔 너무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시민단체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무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는 인구정책으로만 불가능하며, 사회복지의 지원 대상으로 가족을 보는 것도 부족하다. 여기서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를 건강할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끌어 올려주는 상호협력적인 통합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특히 참여정부는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상담사업 활성화”를 어젠더로 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예방사업과 상담하는 전문시스템의 도입을 절실히 요청하여온 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외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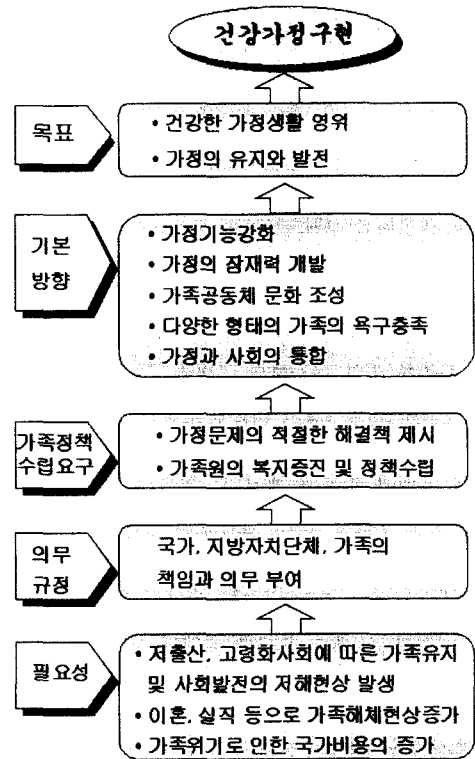
현재 독일, 프랑스 등도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약칭 “가족부(가족노인 여성청소년부)” 또는 “가정 및 아동국”을 설치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사업을 보면 가족휴양, 양육비 지급, 가족상담업무, 가족지원복지 확대망 구축, 아동수당, 가족의 경제적 지원활동, 가족강화 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참여, 친권의 동등성, 애정결핍, 가족의 사회적 보장, 청년층의 지원(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미국도 건강사회복지서비스부내에 “아동가정실”

을 두고 가정지원국의 4개국을 두고 있다. 특히 1996년 정부개혁(예산조정안)을 보면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요보호 아동가족지원법을 가지고 가족을 지원하던 법을 최근에 철폐하고 가정의 자립을 위한 한시적 지원법으로 도와주고 있다. 미국의 가정강화를 위한 정책은 결혼 장려프로그램, 이혼방지프로그램, 부모역할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을 포함하며,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지원정책 강화(자녀양육지원), 가족의료휴가제도 도입, 노인부양지원 정책 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주정부를 중심으로 “결혼준비 및 강화법”이나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법” 등이 제정되어 주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최근에 “가정교육법”을 통과시켜 국가차원에서 공교육기관을 통해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결혼 전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속에서 가족원이 생활하고 인간성장과 발달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림 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기본틀

I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 방향

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하 기본법)의 체계

〈그림 1〉에서 보듯이 기본법은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가정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과 정책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의 기본방향은 첫째, 가정기능강화, 둘째, 가정의 잠재력 개발, 셋째,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넷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충족, 다섯째,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이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로 한다.

2.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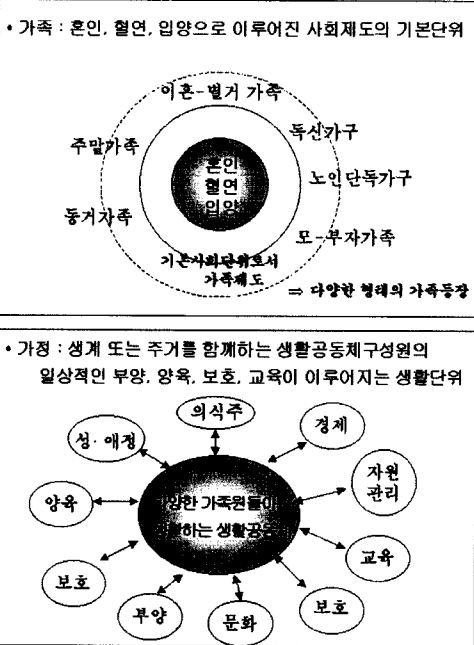
이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넘어갈 것은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 “육성”의 개념과 의미이다.

법 제 3조에서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이해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가정이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본 기본법에서의 가정의 개념은 다양한 가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동체로서 의식주, 성·애정, 양육, 보호, 부양, 문화공유, 교육, 자원 관리, 경제 등의 기능을 공유하는 넓은

‘가족’과 ‘가정’의 개념 정의



〈그림 2〉 가족과 가정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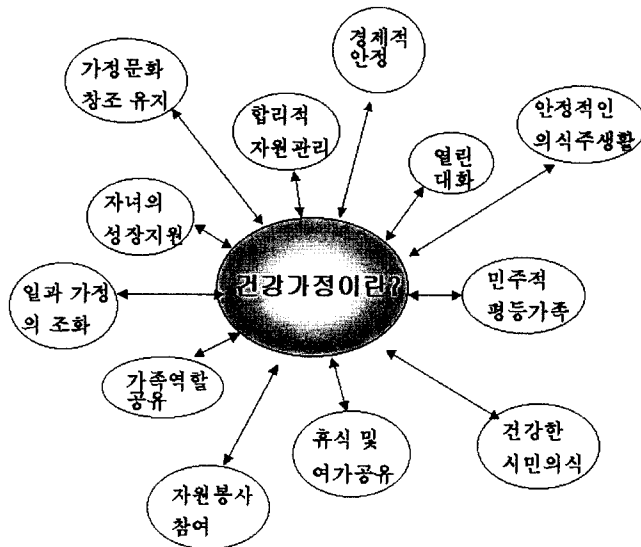
의미를 가진 가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건강 가정(strong families)”은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제3조 3항).

건강가정을 연구하는 학회나 연구가들의 자료(유영주의: 1997, 최경석의: 2001)를 기초로 건강가정의 특성을 도표화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건강가정은 기본적으로 1)경제적 안정, 2)안정적인 의식주생활, 3)건강한 시민의식과 참여, 4)자원봉사 등의 이타적인 참여, 5)일과 가정의 조화, 6)가족의례를 통한 가정문화를 유지하고 창조, 7)가족간의 열린 대화, 8)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9)가족간의 휴식과 여가 공유, 10)가족역할의 공유, 11)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12)합리적인 자원 관리가 적절히 충족될 때 우리는 가정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비건강-건강의 단순한 이분적인 분류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매트릭스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 가정도 항상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환절기가 되어 여러 일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상황이 악화되어 들



〈그림 3〉 건강가정의 개념도

볼 기회를 잃어버리면, 폐렴으로 진전되어 위험할 수 있듯이 가정도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한 요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통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또 하나의 용어의 오해는 “육성”이란 표현이다. 여기서 육성은 발전(development, promotion)의 의미이며, 자생력을 키우는 뜻을 가지되, 목표지향적인 의지를 나타낸다. 가족은 육성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가정은 육성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은 국가의 강력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지원 대상으로 원조나 부조를 받는 대상이 된다. 여기서 가정의 건강성을 갖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교육하며 의식운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가정을 강하게 한다는 것, 기능적으로 되게 하는 쌍방향의 노력을 포함한다.

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구성체계

이 법은 제7장 47조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법이 사업법인가, 기본법인가에 따라 법안의 용어나 철학, 정책 기조 등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법안이 기본법이다 보니 총칙에서 선언적인 부분도 담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본 기본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되었다.

총칙에서(제1조~제12조)는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예방, 지역사회자원 개발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은 건강가정육성정책의 장(제13조~제20조)으로 중앙 건강가정육성위원회, 시도 건강가정육성위원회, 건강가정육성의 기본계획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계획수립의 협조, 교육연구의 진흥, 가족실태조사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건강가정육성사업의 장(제21조~제35조)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 증진, 가족부양지원,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역할, 가정생활문화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가정문제 발생 예방사업,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육성교육, 가정문제 종합상담, 자원봉사활동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한 것은 가족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4장은 건강가정육성전담조직 등(제36조~제39조)에 관한 장인데, 건강가정육성전담부서의 설치, 건강가정육성협회,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설치,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달체계가 제대로 살아 있어야 재정과 인력 수급, 행정적인 지원 속에 본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결과로 사라진 가정복지의 중요업무들이 이 법의 지원을 받아 더욱 실천적인 과제로 바뀌고, 건강가정육성정책이 주요 어젠더로 선정되어 국가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중요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건강가정육성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행정 시스템과 센터의 개설, 터미널 들을 개발하여, 행정과 민간자원과 조직들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5장은 건강가정육성 전담인력에 관한 장(제40조~제42조)으로 전담인력을 “건강가정지도사”라 명명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가로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는 센터나 관련 기관은 건강가정지도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보육교사를 철저히 검증하는 국가시험을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료(보수)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다보니 항상 현장에서는 검증에 관한 시비가 있다. 이제는 노인복지에서도 노인 케어기술을 검증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청소년 상

담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자격검증이 필요하여 2003년부터 청소년지도사를 연수(보수)를 통해 주던 제도를 국가고시제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건강가정육성사업을 하려면 특히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된 인력들이 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문제의 상담과 예방 사업, 다양한 가정(가족)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문화운동 등은 일정 연수로 단기간에 교육되는 부분이 아니다.

만일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전공이수자들일지라도 국가시험 및 인턴십을 통해 전문가(specialist)로서 건강가정육성사업에 철저한 의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종사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건강가정육성기금(제43조~제45조)에 관한 사항이다. 사실 많은 기본법이나 사업법에서 기금설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기금을 통해 실행하는 것보다는 일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주민의 삶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며, 지방분권시대에 주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어젠더이기 때문이다. 밀착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으며, 참여복지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장이기 때문이다.

제7장은 보칙 조항(제46조~제47조)으로 보조금과 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가정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출산장려수당이나 양육(보육)수당, 부양수당, 가족수당 등은 조세감면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체 근로자 가정을 위한 다양한 건강사업들과 관련한 재정 등은 조세특례를 통해 간접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시행령 작업 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패러다임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정(생활공동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유지와 발전의 주요 사회적 자본으로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을 인식하고 국가사회비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장기적

인 포석이기도 하다.

가정이 해체됨으로 소모되는 비용(cost)과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됨으로써 절약되는 효과성 산출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주요 특성으로 비계산성, 이타성, 상호호혜성, 인간윤리유지, 성과 사랑의 유지, 무조건적 자녀양육과 사회화, 헌신성 등은 가족이 유지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은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 체계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사회변화에 대해 저항하기도 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상호의존적 체계이다. 따라서 가정은 사회가 강요한다고 따라 가지 않으며 자립성과 상호작용, 협상의 대상으로 자율성을 가진 조직체이다.

이는 곧 가정이나 가족을 생태학적 관점과 생애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가족)의 역사성과 동시성, 환경체계의 역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풀어 나가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지체현상이나 문제를 상황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다시 역기능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자녀수를 줄이는 가족계획운동과 정책이다. 따라서 통일이란 변수를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흐름과 경제활동인구, 여성취업,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시민의 개인행복추구, 가치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완급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가족(가정)은 마음대로 디자인되는 대상(objects)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스스로를 디자인하는 힘을 가진 주체자(subjects)로 인식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가정을 육성의 대상(object)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정을 육성하는 주체자(subject)로 상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가정에 대하여 정책을 통해 발전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갖는다.

물론 깨어진 가정, 요보호 가정, 위기가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원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원대상(object)으로서 긴급수혈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사업법 등에서(필

요시에는 제정해야함)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가정중심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엔 센터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사회복지네트워크와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가정도 이러한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어느 날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실직 상황, 부도, 출산, 이혼, 부부취업 등으로 인한 가정문제이다. 가능한 한 우리는 문제를 주체자로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힘과 조직을 갖도록 평상시에도 노력하고 이에 대한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예방 안전망과 체계를 가지도록 이 법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III.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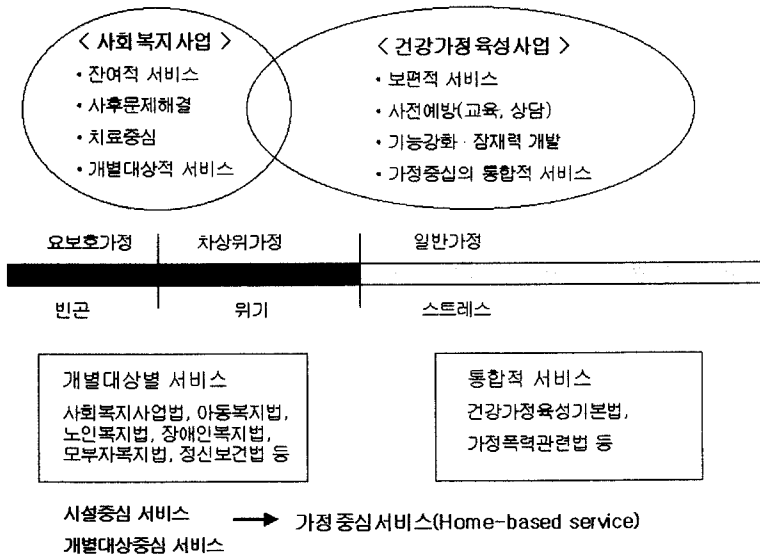
1.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사업대상과 영역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빈곤가정과 위기가정(차상

위보호계층), 일반가정 등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육성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에서 해 온 가족복지사업은 잔여적 복지서비스로서, 사후문제해결중심, 치료중심사업, 개별 대상별 서비스(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인데 반해, 건강가정육성사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가정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서, 보편적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사전예방사업으로 상담과 교육,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운동, 의식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법은 기본법인 관계로 가정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규정된 경우에는 사업법을 통해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선연적 의미와 개발되어야 할 사업영역들을 주로 규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의례와 자원봉사의 참여, 시민의식 함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정생활문화발전, 건강가정생활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법 들을 언급함으로써 실제로 지원의 범위를 넘어 공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건강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건강가정육성사업의 대상과 영역

이 법에서는 가족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중심 과업(home based tasks)들을 개발하여 현재의 가정문제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

2. 건강가정육성사업 주요 내용

이 법에서는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부터 제35조까지 15영역에 걸쳐 주요 사업들을 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사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1조)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3) 안정된 주거생활
-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 (6)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9) 기타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2) 자녀양육 지원 강화(제22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족단위복지증진(제2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 연금, 생활보호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가족의 건강증진(제2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가족부양 지원(제25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노인 등 부양 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제26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및 해결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 및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제27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원의 성장을 위해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가정생활문화 발전(제2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가정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가족여가문화
 - (2)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3)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4) 합리적인 소비문화
 - (5)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 (6)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9) 건전한 가정의례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제29조)

- ①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례, 제례, 장례, 성인의례, 각종 축하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가정봉사원 양성 및 파견(제30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환자보호, 노인요양 등 가정생활에서 부족한 손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가정봉사원 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가정문제발생 예방(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발생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2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전의 상담기간 설정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건강가정 육성 교육(제33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결혼준비교육
 - (2) 부모교육
 - (3) 가족윤리교육
 - (4)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14) 가정문제종합상담(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생활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5) 자원봉사활동 지원(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건강가정육성사업을 위한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중심으로 전달체계가 있어야 하며, 가정(가족)에게까지 프로그램 실시와 교육, 상담, 지원, 사업들이 연관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는 국무총리 산하에 건강가정육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법 제13조 참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두어(법 제14조 참고) 본 정책에 대한 시행과 재정지원, 사업들을 심의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IMF와 함께 행정조직의 구조조정대상으로 가정복지과가 주무부서임에도 폐과되었으나, 2002년 5월 가정복지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됨에 따라 “가정·아동복지과”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광역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정복지과나 계가 거의 사라져버려 본 법을 통하여 새롭게 재탄생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제35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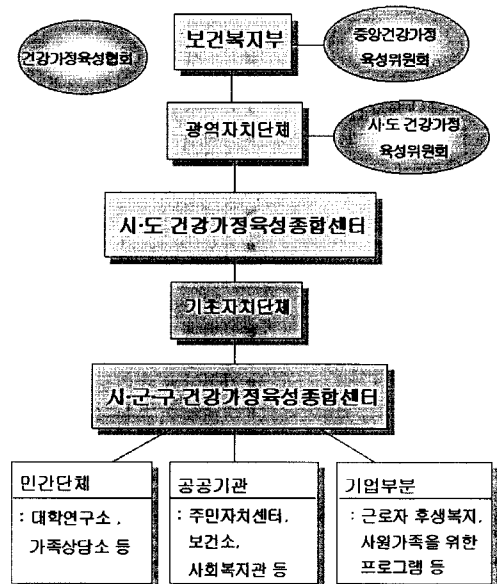
외국의 행정조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는 행정시스템으로 “가정지원부”를 두고 “아동가족서비스실”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으며 “아동가정복지국” 내에 기획과, 가정복지과, 육성환경과, 보육과, 모자보건과 등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참고로 고령화사회로 노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인보건복지국이 독립되어 있음).

그러면 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육성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훨씬 빠르게 사업이 체계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전문화하고 진행할 센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센터는 시도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제38조, 제39조 참고).

도표에서 보듯이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터미널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업부분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에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업부분의 경우 기업체 등에서 근로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상담 및 치료센터, 아동발달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사회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건강가정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생각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학회,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인력·재정의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리라 본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0만 인구 단위로 가족·아동발달지원센터를 두고 아동 뿐 아니라 그의 가족, 노인들까지 가족의 건강평가, 상담과 지원 시스템, 여가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그림 5〉 건강가정육성센터의 조직

〈표 1〉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사업내용

1. 가정문제발생의 예방과 치료 (제31조, 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사업 ■ 가정폭력 예방과 상담교육 ■ 가족단위의 시민의식과 역할 함양 ■ 가족의 건강증진사업 ■ 가족해체 방지사업 ■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산업 ■ 상담소의 가정상담요원 교육 및 지원 ■ 다양한 가족형태의 건강성 증진사업 ■ 가족문제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건강가정육성교육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 부부교육 ■ 양성평등 가족교육 ■ 은퇴자를 위한 가정생활적응 교육 ■ 가정생활설계 교육 등
3. 가정생활문화발전 (제28조, 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여가 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 건전한 가정의례(혼례, 제례, 장례, 성인례, 각종 축하연 등) 모델 개발 및 보급 ■ 가족공동체 운동 활성화 사업(공동육아, 생협운동지원, 사이버 공동체가정 지원, 좋은 부모 되기 운동 등)
4. 가정문제종합상담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관련 상담소 지원 ■ 위기가족,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상담 ■ 가정생활지원 종합 상담(예: 가정생활설계상담, 가족관계증진 상담, 자녀양육상담, 가계재무관리상담, 소비자상담, 식생활 및 영양관리 상담, 노인·장애인 가정 등을 위한 주택개조 상담 등)
5. 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실태 조사 ■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가정생활관련 정보 제공 ■ 사이버 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가정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기부금 문화 조성 사업 ■ 기업, 행정기관, 대학 등 산·관·학 연계사업
6. 재가서비스사업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육아, 산후조리, 노인부양 등의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가정봉사원 교육 및 연수
7.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기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맞벌이가족을 위한 직장-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도·농가정의 화합 및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가족단위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노부모-자녀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소외가정, 위기가정, 요보호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8. 자원봉사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 지원 ■ 가족단위 자원봉사 인증사업 ■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가족단위 자원봉사 교류 사업 ■ 자원봉사기금 조성 사업

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는 통합적인 서비스시스템을 구현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목적은(법 제38조 근거)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둘째,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셋째, 가족문화운동 전개, 넷째,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다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족지원 등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시도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는 건강가정육성사업의 기획·조정, 가족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및 보급, 예산 배정, 홍보와 마케팅 사업, 캠페인 등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센터는 건강가정육성사업의 집행, 상담과 교육, 건강가정지도사의 파견, 홍보와 캠페인 마케팅, 사업과 관련한 예산집행 및 배분, 관련 단체 사업의 심의 평가, 지자체의 가족실태조사, 가족(단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는 법에 근거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심장부의 역할을 담당한다.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에서 담당할 사업은 <표 1>과 같다.

4. 건강가정지도사의 역할

앞에서 건강가정육성사업의 내용과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위해 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지도사 1급, 2급, 3급을 두고 1급은 국가시험을 보도록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건강가정지도사는 1급, 2급, 3급 모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두 국가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가정지도사 3급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집행, 건강가정육성사업의 활동, 초기상담 및 교육, 대상자 면접, 정보망 구축과 네트워크 활동, 건강가정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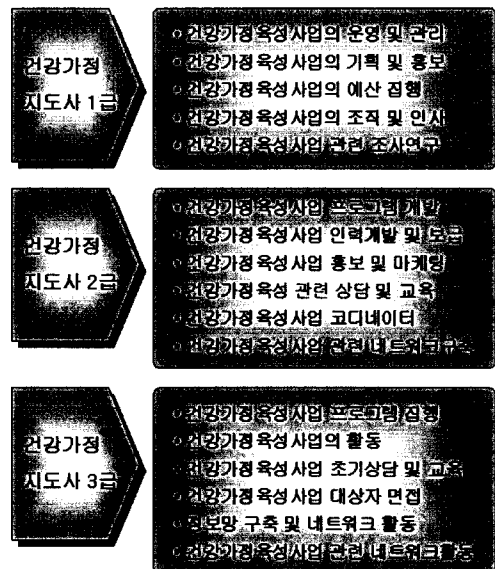
성사업관련 지역사회 등의 네트워크 활동이다.

건강가정지도사 2급의 경우는 건강가정사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및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상담과 교육사업, 건강가정육성사업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로 비교적 전문인으로 수준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강가정지도사 1급은 건강가정육성사업의 책임자나 운영자, 관리자로서 사업관련 운영과 관리, 기획과 홍보, 예산집행의 조직과 인사, 연구조사사업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가정지도사는 청소년상담사처럼 철저하게 자격관리로서 전문가적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 성격이 창의적이면서도 지역현안에 따라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해야 하며, 프로그램과 사업마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관계로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수하는 조건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건강가정육성전문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을 1급에서 3급까지 모두 치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 건강가정지도사의 역할

IV. 맺으며

본 논고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정의 건강성의 가치를 높이는 법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술되었다.

본고에서 기본법의 성격에 충실하면서도 법에 담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 전담인력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특히 “건강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국가유지 및 발전의 축으로 건강한 “가정”을 상정할 뿐 아니라, 가정을 사회의 중요한 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로 인한 국가 사회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나라의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가정의 기능강화와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건강가정구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정의 노력과 책임은 시대적인 사명이다.

또한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은 바로 지방자치시대 주민복지의 제일 현안과제이며, 거시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행하는 참여복지의 주체이기도 하다.

가족해체현상의 가속화와 고령사회로의 진입, 저출산 문제는 개인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적응하려는 가족들의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가정(육성)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전환, 가족윤리와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그런 의미에서 사후 치료적인 입장에서부터 전환한 예방적이고 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법은 그동안 가정복지정책(업무)이 거의 개발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의 근거법이 될 것이다.

본 법안이 제정됨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효과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가정”(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사회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혼여성도 취업을 해서 여성의 유희인력

을 사회노동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법제정으로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와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해체 현상을 예방하고, 비록 가족이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를 지원해줄 가족과 사회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갖게 될 때 삶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삶의 고달픔에 대해 극단적인 집단자살을 하는 가족, 분노를 가정폭력으로 표현하는 가족원과 그에 회생되어가는 가족의 역동성 문제가 일부분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쌓인다고 쉽게 헤어지는 부부들의 결정도 그들 나름의 약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약점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극약 처방은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이러한 면을 인식하고 가정의 스펙트럼을 좀더 크게 보고, 문제해결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든 세대간이든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야 할 공간이 가정이라면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부부가 되기 위한 교육, 갈등 해결전략, 노인부양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도 이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학교교육과 직장에서 무시되어온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찾아, 작은 행복도 중요하다는 점이 이 법안에 담겨있다. 가정의 중요성이 이번 기회에 다시 강조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희망을 얻는 사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천, 윤희미(2000).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김승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혜인, 송혜림, 유정순, 윤경자, 이승미, 이완정(1999). 가정복지사의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방안-가정복지센터의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의 행정자치부 제출문건-미간행.
- 송정아, 전영자, 김득성(1998). 가정생활교육론. 교문사.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4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 유영주(1997).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출판부.
- 이승미(1999).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가정복지서비스 실천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4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 장경섭(2000). 가정단위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조희금(2000).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대구대학교 2000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21세기 가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 정민자(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체계, 내용, 쟁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제정을 위한 워크샵"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추진위원회.
- 최경석 외(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최성재(1995). 복지국가와 가족.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한국가족학회편. 도서출판 하우.
- 최연실(1999). 가정복지정책과 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4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한국상담학회(200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집단 연수회 자료집. 한국상담학회.
- 한국가족관계학회편(1998). 가족생활교육론. 도서출판하우.
- 한국여성개발원(2002). 외국의 가족정책 현황과 과제.
- Susan White Downs etc. (2000).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Allyn and Bacon.
- 가정복지사 www.homewell.co.kr
- 문화관광부 www.mct.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사회복지사 www.welfare.net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www.sasw.or.kr
- 청소년상담사 www.youthcounselor.or.kr